#### 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191호

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25일 금융위원회

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 일부개정규정(안) 재규정변경예고

### 1. 개정이유

금융분야 데이터 결합·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정보집합물 이용기 관의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을 허용하는 등 데이터 결합·활용과 관련 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,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 2. 주요내용

가. 정보집합물 결합 제도 개선(안 제15조의2)

1)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 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

- 2)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,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
- 3)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함
- 나.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이후 전문기관의 충실한 업무수행 유도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(3년)을 부여함(안 제28조의3)
- 다. 금융권이 수신고객의 사망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함(안 별표6)
- 라. 국가기관에 적용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요건의 경우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국가기관이 보다 원활히 데이터전문기 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(안 별표7)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 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

- 전자우편 : creatcross@korea.kr

- 팩스: 02-2100-2745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(전화 02-2100-2621 팩스 02-2100-274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